DDA, 2008년 1월 농업협상 동향

신 유 선*

DDA 농업협상이 1월 3일부터 1월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주요국 심층회의 중심으로 개최되었다.

팔코너 농업협상그룹 의장은 다자협의(주요국 심층회의, Room E[1])를 집중적으로 개최하여 세부원칙(Modalities)[2] 수정안 제시 전 협상의제 전반에 대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shinys@krei.re.kr 02-3299-4287

1) "Room E" 참가국과 가입된 그룹 현황
: 아르헨티나(케언즈 그룹,G-20), 호주(케언즈 그룹), 베닌(Cotton-4,아프리카 그룹, 최빈개도국(LDC), 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지역 그룹(ACP), 브라질(케언즈 그룹,G-20), 중국(G-33, G-20), 콜롬비아(케언즈 그룹,열대작물 그룹), 코스타리카(케언즈 그룹,열대작물 그룹), 쿠바(G-33,소규모취약국가(SVE)), 도미니카공화국(G-33, 소규모취약국가(SVE)), 에콰도르(열대작물 그룹, 신규가입국), 이집트(G-20,아프리카그룹), EU, 인도(G-33,G-20), 인도네시아((G-33,G-20,케언즈 그룹), 자메이카(G-33,SVE,ACP), 일본(G-10), 케냐(G-33,아프리카,ACP), 한국(G-33,G--10),레소토(LDC,아프리카,ACP), 모리셔스(G-33,ACP,아프리카), 말레이시아(케언즈 그룹), 멕시코(G-20), 뉴질랜드(케언즈), 노르웨이(G-10), 파키스탄(케언즈 그룹,G-20,G-33), 파나마(G-33,열대작물), 파라과이(케언즈 그룹,G-20,열대작물), 필리핀(G-33,G-20,케언즈 그룹), 스위스(G-10), 태국(케언즈 그룹,G-20), 터키(G-33), 우간다(아프리카,LDC,ACP), 우루과이(케언즈 그룹,G-20), 미국, 베네수엘라(G-33,열대작물,G-20).

2) 세부원칙은 관세와 보조금을 감축하는 폭, 감축기간 등 구체적 수치를 담은 문서인데 세부원칙이 타결되면 각국별로 세부원칙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적은 문서 즉, 이행계획서(Schedule)를 WTO에 제출한다. 이행계획서가 세부원칙에 따라 잘 만들어 졌는지에 대해서 WTO 회원국들이 검증을 하고 검증이 끝나면 DDA 협

타협안 도출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한편, 라미 WTO 사무총장은 2007년 11월 그린룸회의(주요국 협상수석대표 회의)에서 DDA 협상 타결 시점을 2008년 말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1월 말경 농업협상그룹 의장의 세부원칙(Modalities) 수정안이 제시될 예정이며, 이후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고위급 또는 각료급 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다자협상에 참가하여 G10[3], G33[4] 등 유사한 입장을 가진 나라들과 공조를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핵심이익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1. 협상 동향

1월 3일부터 11일까지 Room E협의가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1월 3일부터 4일까지는 국내보조(Domestic Support), 1월 7일부터 9일까지는 시장접근(Market Access), 1월 10일에는 수출경쟁(Export Competition)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1월 11일에 개최된 Room E 협의에서는 면화(Cotton)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고, 연이어 전체회의가 개최되었다.

상이 종결된다.

3) G10은 한국,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 농산물 순수입국 모임인데, 농산물 관세를 지나치게 많이 감축하는데 반대하는 그룹이다.

4) G33은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필리핀 등 개도국 특별품목(Special Products)을 옹호하는 나라들의 모임인데, 개도국 특별품목 개수를 충분하게 많이 인정하고 관세감축을 적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장은 1월 11일 Room E 협의를 통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1월 21일 주간부터 수정텍스트를 작성하여 1월말까지 이를 제출할 계획이며, 그동안 또 다른 Room E 협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다수의 국가들 특히, 개도국들은 수정 텍스트 제출 이후 수평적 협의로 진입하기 전에 농업협상그룹 차원의 논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각 협상그룹 및 주요국별로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경쟁[5]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반복하였으며, 우리나라는 Zero Cut 특별품목(SP) 숫자의 확대, 특별품목(SP) 문제와 관세감축공식과 분리해야 한다는 논의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였다.

신규가입국(RAM)[6]은 작업문서가 신규가입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1월 14일 G33 주요국 대사급 협의에서는 1월초 Room E 협의가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대부분 긍정적이었다고 평가 하였다. 특히 특별품목(SP)에 대한 논의에서 의장이 G33의 hybrid 접근법을 작업문서에 반영하고, Zero cut에 대해 명시하는 등 유용하였다는 평가에 참석국들이 공감하였다.

---

5) 농산물 관세 감축 분야를 시장접근(Market Access), 농업보조금 감축과 제한을 국내보조(Domestic Support),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과 식량원조 제한, 농산물 수출을 위한 금융지원 제한을 수출경쟁(Export Competition)이라고 한다.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경쟁이 농업협상의 3대 분야입니다.

6) WTO에 새로 가입한 나라들은 가입과정에서 관세와 보조금을 많이 깎았기 때문에 DDA 협상에서 관세와 보조금 감축을 적게 할 수 있다. 구체적인 감축폭은 협상 중에 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신규가입국으로 분류할 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는 없으나 DDA 협상이 출범한 2001년 11월이 기준 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수출국들이 Zero cut에 대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등 큰 진전은 없었으며, 의장이 Zero cut에 대한 작업문서의 애매한 표현에 대한 명시를 했음에도 여전히 의장의 생각이 변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지적되었다.

의장은 아직 입장차가 좁혀들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수정 텍스트 작성시기(1월 21일 주간) 사이에 회원국들이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수정 텍스트는 보다 깨끗한 텍스트('A Lot Cleaner Revision')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 주요 협상 내용

2.1. 시장접근(Market Access) 분야에 대한 논의

2.1.1. 관세상한(Tariff Capping)

관세상한[7] 도입과 관련하여 수출국들은 의장 작업문서에 직접적인 관세상한 규정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관세상한 도입을 주장한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입국들은 관세상한은 지나친 부담이 되어 수용할 수 없다고 대응하였다.

2.1.2.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s)

민감품목[8] 지정 및 대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등 수입국들이 민감품목 선

---

7) 관세상한은 일정한 수준을 넘는 관세는 무조건 일정한 수준으로 끌어 내리자는 개념으로 미국은 관세상한 75%p, EU와 G20는 관세상한 100%p를 제안하였고 G10과 여타 일부 주요국들만 관세 상한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8) 민감품목은 관세감축을 덜 할 수 있다. 다만 대가로 수입쿼터(TRQ)를 주어야 한다. 민감품목의 개수는 국별로 전체 세 번(tariff lines)의 5% 내외에서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민감품목의 대우 즉, 관세를 얼마나 적게 감축하고 TRQ를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는 DDA 협상에서 가장 첨예한 이슈 가운데 하나이다.

정 개수 확대를 주장한 반면 수출국들은 이에 반대하였고, 민감품목 지정시 TRQ(저율관세 수입물량) 증량방식에 관한 기술적 문제에 논의가 집중되었다.

특히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는 분야 즉, 가공품과 하한(Floor) 설정 등에 대해 이해관계국들의 계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Deviation을 3개로 늘린 데 대한 의견수렴을 확인하였다.

민감품목은 작업문서에 기초하여 여타분야처럼 구조에 근접하는 상황이다. 다양한 요구가 아직 있으나 진전이 있는 상황이므로 더 신중하게 작업문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2.1.3. 특별품목(Special Products)

개도국 특별품목(SP)[9]의 대우와 관련해서는 개도국 그룹(G33)이 의장문서에서 제시된 특별품목의 관세감축 폭이 너무 크고 관세감축 면제 범위는 지나치게 작다고 강한 불만을 표명하였다.

2.1.4. 관세감축공식

관세감축공식에서는 구52, 53항을 민감품목규정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논의 되었다.

2.1.5.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

경사관세[10]의 방법론(Methodology)에 대해서는 의견대립이 크지 않았으나,

---

9) 개도국들은 식량안보, 생계유지, 농촌개발의 필요를 감안하여 특별품목을 지정할 수 있다. 특별품목 개수와 대우에 대해서는 이를 최대한 제한하려는 선진국, 농산물 수출개도국들과 이를 가능한 확대하려는 농산물 수입개도국간 입장차가 크다.

10)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는 농산물의 가공도가 높아질수록 관세가 높아지는 현상인데 농산물 가공업을 많이 보호하는 선진국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DDA 협상에서는 가공도가 높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원재료 농산물에 비해 관세를 좀 더 감축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문제는 품목범위임을 확인하였다.

2.1.6. 관세 단순화(Tariff Simplification)

관세 단순화[11]는 어느 정도까지 단순화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대립이 지속되었으나 매우 복잡한 관세형태에 대한 결론은 분명해 지는 상황이다.

2.1.7. 쿼터 내 관세

쿼터 내 관세에 대한 의견대립은 크지 않으나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차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기존 TRQ와 신규 TRQ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

2.1.8. 수입쿼터(TRQ) 관리방안

TRQ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작업문서가 합리적인 논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2.1.9. 특별긴급관세(SSG)

특별긴급관세[12]에서는 주요국(EU)의 입장 변화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

11) 관세단순화(Tariff Simplification)는 종량세 등의 관세를 종가세와 같이 단순한 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종가상당치(Ad-valorem Equivalent)란 종량세를 종가세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종가세는 수입가격에 X%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고 종량세는 수입물량에 일정금액의 관세(예컨대 100원/kg)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DDA 농업협상에서는 관세를 높고 낮은 구간대로 나누어서 높은 관세를 보다 더 많이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종량세 등에 대한 종가상당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452ro 농산물 세 번(tariff line)중에서 76개 세 번이 종량세이고, 이 또한 종가세와 병기되어 있어 종량세와 종가세 중 더 높은 수치를 적용하는 혼합세(mixed duty)이다.

12)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농산물에만 적용하는 특별긴급관세 제도가 탄생하였다. 수입물량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거나 국제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자동적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추가로 부과되는 관세를 '구제조치(Remedy)'라고 하기도 한다. SSG는 모든 농산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국별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농산물을 이행계획서(Schedule)에 표시해 두었다.

2.1.10.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1월 14일 G33 주요국 대사급 협의에서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13]는 Room E에서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의장이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텍스트에 담을 가능성이 높다는데 공감하였다.

2.1.11. 열대작물(Tropical Products)

열대작물[14]은 품목범위에 큰 이견차가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회원국들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2.1.12. 특혜잠식(Preference Erosion)

특혜잠식[15]에서는 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연안(ACP) 소규모 국가들이 기존 품목을 일부 감축한 수정 리스트를 제출함으로써 일보 진전이 있었다. 사무국도 페이퍼를 제출하였으며, 회원국들끼리 논의를 통해 수정 텍스트 작성전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희망하였다.

2.2. 국내보조(Domestic Support) 분야에 대한 논의

국내 보조분야에서는 선진국의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및 감축대상보조(AMS)의 이행 첫해 감축률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회원국간 의견대립이 있었다.

---

13) DDA 협상에서 개도국을 위한 특별긴급관세(SSM, Special Safeguard Mechanism)를 만들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협상중인데, 기존의 특별긴급관세(SSG, Special Safeguard)와 유사한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4) DDA 협상에서 열대작물 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열대작물에 대한 관세를 많이 깎으려는 움직임이 있다. 관건은 열대작물의 정의와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인데 쉬운 해결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15) 특혜잠식문제는 주로 모리셔스 등 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연안(ACP) 소규모 국가들이 제기하는 문제이다. 이 나라들은 설탕 등 일부 농산물을 낮은 특혜관세로 EU 등 선진국 시장에 수출하고 있는데, 선진국들이 관세를 전반적으로 낮추면 특혜관세와 일반관세의 차이, 특 특혜마진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게 된다고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 무역왜곡보조총액(OTDS)[16]의 개도국 우대(S&D)[17], 이행기간(Implementation Period)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② 최소허용보조(De-minimis)[18]와 무역왜곡보조총액(OTDS)간 상호연관관계 확인, ③ 품목 특정 감축대상보조(AMS)[19]에 대한 추가 명시 필요, ④ 과도기적 보조(Blue Box)[20]에 대한 이해관계 확인이 이루어졌다.

---

16) DDA 협상에서는 감축보조(AMS), 감축면제보조(De-minimis), 블루박스를 묶어서 무역왜곡보조총액(OTDS:Overall Trade Distorting Support)이라고 하기로 했으며, 감축보조(AMS), 최소허용보조(De-minimis), 블루박스 각각도 감축해야 하고 사용상 제한이 따르며, 이를 모두 더한 무역왜곡보조총액(OTDS)도 감축해야 한다. 아파트에 비유하면, 아파트의 전체 평 수(ODTS)를 줄이고 각 방(AMS, De-minimis, Blue Box)의 크기도 줄여야 하며, 더욱이 각 방도 멋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제약이 따르게 된다. 즉, 국내 보조금 규모를 줄이고 품목별로 줄 수 있는 보조금의 한도도 도입하는 등 각종 제약을 도입하자는 것이 협상의 전반적인 방향이다.

17) DDA 협상에서 개도국은 선진국에 비해 관세와 보조금 감축폭이 작고 이행기간도 길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 개도국은 관세와 보조금 감축폭이 선진국이 2/3 수준이었고 이행기간도 개도국은 10년, 선진국은 6년이었다. 물론 최종 협상 결과에 따라 개도국별로 실제 감축폭과 이행기간이 다를 수도 있다.

18) De-minimis는 라틴어로 “법은 사소한 일에는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다. 최소허용보조는 감축보조(AMS)와 성격이 같다. 다만,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감축의무가 면제되었다. 선진국의 경우 농업생산액의 5%, 개도국의 경우 10% 한도 이내이면 최소허용보조이고 감축이 면제되었다. 그러나 DDA 협상에서는 최소허용보조도 감축해야 한다.

19) 농업보조총액이라고도 한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각국이 추곡수매제 등에 사용하는 보조금 한도를 정해서 이행계획서에 표시하였고, 이것을 감축하기로 하였다. 선진국은 6년간 20%를 감축하고 개도국은 10년간 13.3%를 감축하기로 하였다. DDA 협상에서는 이렇게 감축하고 남은 한도에서부터 가축하기로 하였는데 구체적인 감축폭은 협상중이다.

20) 단순하게 보면 본질적으로는 감축대상보조(AMS)와 같은 보조금이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과정에서 주요국간 타협의 산물로 탄생했는데, 생산을 제한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대신 감축의무가 변제되는 보조금이다. 이것이 기존의 블루박스(Old Blue Box)이다. 우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표 1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감축폭

구 간	OTDS 감축폭		
	2006. 6월	2007. 4, 5월	2007. 7월
1 (EU)	70～80	좌 동	[75] [85] %
2 (미국, 일본)	53～75	"	[66] [73] %
3 (기타)	31～70	"	[50] [60] %

자료 : 농림부

표 2 감축대상보조(AMS) 감축폭

구 간	AMS 감축폭		
	2006. 6월	2007. 4, 5월	2007. 7월
1 (EU)	70～83	70	[70] %
2 (미국, 일본)	60～70	60	[60] %
3 (기타)	37～60	37～60	[45] %

자료 : 농림부

2.2.1. 면화(Cotton)

C4 그룹은 면화이슈가 매우 중요한 이슈이므로 면화에 대해 추가적인 의무부담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EC가 C4 제안을 지지하면서도 세부원칙초안 38항에서 제시한 감축대상보조(AMS)의 과도기적 보조(Blue Box)로의 전환비율을 1:1로 제시한 것은 블루박스를 늘리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하였다.

대다수의 국가들은 C4 제안을 지지하며, 면화는 매우 정치적이고 민감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EC는 자국의 면화 생산비중이 전 세계 생산의 2% 수준으로 낮으며 현재 면화에 대해 완전한 시장개방을 하고 있고 단지 전체 보조의 35%만 블루박스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자국에 대한 타국의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회의 시 제안한 감축대상보조(AMS)와 과도기적 보조(Blue Box)의 전환비율을 2:1에서 1:1로 하는 방안을 재차 강조하였다.

2.3. 수출경쟁(Export Competition) 분야에 대한 논의

2.3.1. 수출신용(Export Credit)

수출신용[21]에서는 G20[22] 제안의 6항bis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가 없었으며, 7-9항도 제거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3.2. 식량원조(Food Aid)

식량원조[23]에서는 비긴급상황하의 현금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2.3.3. 차별 수출세

차별 수출세의 Bracket 제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며, 일본이 신규 수출세에 대한 입장을 개진하였다. 차기 수정 시 100% 완성도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

21) 농산물 수출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 이자 등 금융거래가 필요하다. 과거에 농산물 수출에 조달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낮은 금리 등을 적용했는데, DDA 협상에서는 이를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고 시장금리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방안을 협상중이다.

22) G20는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국 등 개도국 그룹이다. 큰 틀에서 보면 미국, EU 등 선진국을 견제하는 개도국 그룹이라고 볼 수 있다.

23)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이 재고식량을 덤핑으로 해외시장에 파는 경우가 많다. DDA 협상에서는 이러한 덤핑행위도 엄격하게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협상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상으로 원조해야 한다는 것이 협상의 기본 방향이다.

표 3 2008년 1월 DDA 농업협상 주요내용

이슈	주요 쟁점	의장문서내용	1월 협상 내용
관세 감축	○관세상한 도입여부	○관세상한 미포함	○수출국은 관세상한 도입 주장
민감 품목	개수 ○개수 ○지정 단위 관련 -수출국: 품목단위 -수입국: 세번단위	○개수는 4~6%수준 ○세번단위 지정 염두	○G10 등 개수 확대 주장 ○수출국들은 세번단위 지정 시 TRQ물량이 적게 산출되는 문제를 지적
	대우 ○TRQ 증량수준 -세번단위 지정시 소비량 계산문제 i)최소 증량 설정 ii)가공품 처리문제 iii)TRQ관리방안	○TRQ는 소비량의 3-6%수준 ○소비량 계산 관련, 각 국 입장을 반영한 Option 제시	○소비량 계산과 관련된 기술적 이슈에 대한 논의 집중
특별 품목 (SP)	○SP 개수 ○SP 대우 -관세감축면제 여부 및 범위	○개수는 민감품목 개수 보다는 많이 인정 ○일부 면제 인정 (약 1-2%)	○G33은 의장문서 반대 (감축율 크고 면제범위 작음) ○수출국들은 감축면제 반대 ○의장은 새로운 안 제시 - 평균감축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감축면제 인정
특별 긴급 관세 (SSG)	○SSG 철폐 또는 감축여부 ○SSG 발동기준 및 구제조치 개정문제	○Option 제시 -즉시철폐, 4년간 철폐, 일부 유지 등	○수출국은 SSG 철폐 주장 ○G10은 SSG 일부 유지 주장 ○EC는 i)1.5%로 감축, ii) 6년간 철폐, iii)관세화방안 등 제시
경사 관세	○기초 및 가공품 목록 ○가공품 감축율	○목록 미제시 ○감축율 Option 제시	○목록에 대해서는 미합의 ○감축율은 최상위구간감축율 수준 논의
관세 단순화	○종가세 전환비율 ○혼합세 등 전환문제	○종가세 90% ○혼합세 등 종가세(or 종량세)로 전환	○수출국은 전체 종가세 주장 ○G10 및 EC는 일정수준 비종가세 유지 주장
TRQ 관리	○쿼터내 관세 감축율 ○TRQ 관리방안 규율 범위 -실체적 요건 규율문제 -TRQ 미소진 해소방안	○쿼터내 관세의 out-쿼터감축율 수준 감축 ○수입허가절차협정(절차적 규정) 적용	○수출국은 쿼터내 관세 철폐 또는 대폭 감축 주장 ○수입허가절차협정 적용에 대체로 긍정적 반응 -단, 수출국들은 TRQ 미소진 해소방안 적용 강화 주장

자료 : 농림부

3. 향후 전망

각국은 이번 회의가 세부원칙 수정안 제출 전 마지막 주요국 심층회의라는 인식하에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였다.

특히, EU의 경우 금년 4월 이전 농업협상 세부원칙 타결을 목표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참여하였다. 또한 협상이 점차 진전됨에 따라 그룹별 입장에서 자국 중심의 입장으로 전환하는 움직임도 일부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업협상 세부원칙 수정안이 1월말 또는 2월 초에 제시되면 고위급 회의, 각료급 회의 등 협상이 빨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와 공조를 강화하고 학계·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4].

의장이 텍스트를 내기 전까지 G33이 특별품목,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에 대한 새로운 제안서를 제시하는 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나 텍스트 제출 후 예상되는 집중적 협상에 대비하여 G33 주요국 실무 전문가 중심으로 특별품목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의 구체적 문제별로 대안 검토 작업을 집중 전개하기로 하였다.

우선 작업과제 리스트를 작성하여 수일 후 주요국 대사급회의를 재개하여 확정하기로 했으며, 작업일정은 인니가 주요국과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의장 텍스트 제시 후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참석국들은 바로 수평적 협의로

24) 농림부 보도자료(www.maf.go.kr)

넘어가기보다는 의장주도하의 논의과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이에 대해 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연안(ACP) 소규모 국가 등 여타 개도국 그룹 조정국들과 협의 후 공동입장을 라미 WTO 사무총장, 의장단 등에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인니에 협의를 일임하였다.

4. 향후 일정[25]

○ 1월 3~11일: Room E 협의
○ 1월 21일 주간 : 의장 세부원칙 개정안 작성
○ 1월 28일 주간 : 의장 세부원칙 개정안 각국에 배포

참고자료

농림부 보도 자료(www.maf.go.kr)
농림부, 한 번에 끝내는 알기 쉬운 DDA협상용어 50선, 2007.
농림부 해외농업 사이트(www.insidetrade.com)
일본농업신문, 2007. 12. 5.
Washington Trade Daily Vol.17. no 14, 2008. 1. 18. 발췌정리
www.tradeobservatory.org

25) 일본농업신문, 2007. 12. 5.